

대구광역시 서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검토 경위

- 제출일자: 2023. 11. 9.
- 제 출 자: 서구청장
- 회부일자: 2023. 11. 10.(의안번호 제504호)
- 검토기간: 2023. 11. 13. ~ 11. 30.

2. 주요 내용

- 약칭 용어의 위치 수정(안 제1조, 제2조, 제6조)
- 녹색제품의 정의 및 '생산' 문구 삭제(안 제2조, 제5조, 제10조 등)
- 관계 법령과 상충하는 내용이 포함된 규정 삭제(안 제6조 ~ 제9조)
- 포상 범위를 한정하고 근거를 명시(안 제13조)
- 하위 자치법규에 대한 포괄적 위임 규정 삭제(안 제14조)

3.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8조, 제9조, 제11조
-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66조제4항

나. 입법예고: 2023. 9. 20. ~ 10. 10.(접수된 의견 없음)

다. 예산조치: 해당 사항 없음

4. 검토 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과 상충되는 규정을 수정 또는 삭제하여 법적 타당성을 제고하는 한편, 부적절한 문장 및 용어 등을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부합되도록 다듬고자 하는 것으로서
-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제1호 “녹색제품”의 정의 삭제는 위임 법률의 용어 정의를 반복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일 수 있으나, 그 뜻이 명확하다고 하기 어려운 “녹색제품”은 이 조례의 핵심 용어에 해당하므로 해당 법령 조문을 그대로 제시하거나 그 뜻을 직접 밝히는 것¹⁾이 더 바람직해 보임. 안 제2조제3호는 구청장이 사업자 등과 맺는 자발적 협약의 대상을 “구매 또는 생산”에서 “구매”로 축소하였는데, 이는 상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범위가 “구매”에 관한 것으로 한정된 데 따른 적절한 조치²⁾라고 판단됨.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는 상위 법령에서 환경부 지침을 따르거나 공공기관의 장이 판단하도록 한 사항이 포함되나 규정의 상충을 방지하기 위해 이를 모두 삭제하였고, 안 제9조는 녹색제품 대상품목 외의 품목에 대한 판단기준을 제시한 것인데 제3호 “저탄소 인증제품”의 경우 관계 법령의 개정³⁾으로 이미 녹색제품 대상품목에 포함되어 있어서 이를 삭제한 것으로 판단됨.
-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법체계 정합성의 확보를 위하여 상위 법령과 상충되는 부분을 대체로 타당성 있게 수정하였고, 관련 입법 절차를 준수하여 적정하게 개정된 것으로 사료됨.

1) 현행 조례의 정의는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상품’으로 되어 있는데, 해당 법률의 조문을 찾아보면 다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66조제4항에 따른 제품’으로 규정되나 결국 현행 조례의 정의는 제3의 법률을 재인용하는 방식이므로 그대로 두는 것도 부적절해 보임. 명확히 하자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66조제4항에 따른 제품’이란 표현을 그대로 가져오거나, 그 조문에서 ‘녹색제품’으로 약칭된 문구(에너지·자원의 투입과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제품)를 직접 명시할 수 있을 것임.

2)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지방자치단체의 녹색제품 구매촉진 등) ① … 시·군·구는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을 조례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이하 생략) ※ 이와 동일한 이유에서 안 제5조, 제10조, 제11조, 제13조에 포함된 ‘생산’ 문구를 모두 삭제한 것으로 보임.

3) 종전 규정의 ‘저탄소 인증제품’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에서 제시한 적용범위 중 제1호의 2(2020. 1. 29. 신설)에 따른 「저탄소제품 기준(환경부 고시)에 적합한 경우 녹색제품에 포함될 수 있음.